동탄2 A105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 5. 30.)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산199-1번지 일원 행복주택 1,14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탄2 A105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 임대조건, 자격, 청약절차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주자격(요약안내)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생일 1958.5.30 이전)**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출생일 1983.5.31 ~ 2004.5.3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보호종료아동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종료아동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청약절차 및 일정 : [온라인 접수: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인터넷 청약.접수	서류접수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후]
6월19(월) 10:00 ~ 6월22일(목) 17:00	7월 4일(화) 16:00 이후	7월11일(화) 10:00 ~ 7월14일(금) 17:00	약3개월 소요	10월19일(목) 16:00이후	10월31일(화) ~11월3일(금) 17:00까지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우편·현장)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사회보장정보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부동산 전자계약 (https://irts.molit.go.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별도공지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 **행복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은 인터넷청약(https://apply.gh.or.kr)으로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전자계약 마감시간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 접수처 :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전화:031-225-7848**)]

※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최초 모집 공고일(2023.5.30.)」입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구분	건설위치	총세대수	건물층수	입주
동탄2 A105 경기행복주택	경기도 화성시 신동 산199-1번지 일원 (동탄2신도시 A105블록)	1,500호 (금회공급 1,140호)	지하2층~20층	'24년 6월

단지 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난방 방식
	주택 구분	청약 구분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동탄2 A105	26A	26A1	대학생	69	34	35	26.9294	13.3652	2.1134	14.4479	56.8559	6년	지역 난방
		26A2	대학생 (보호종료아동)	60	60	-	26.9294	13.3652	2.1134	14.4479	56.8559	6년	
	26B	26B1	주거급여수급자	87	-	87	26.9294	13.3652	2.1134	14.4479	56.8559	20년	
		26B2	청년	10	-	10	26.9294	13.3652	2.1134	14.4479	56.8559	6년	
		26B3	청년 (보호종료아동)	30	30	-	26.9294	13.3652	2.1134	14.4479	56.8559	6년	
	36A	36A1	청년	205	102	103	36.5520	17.8421	2.8685	19.6106	76.8732	6년	
		36A2	청년 (보호종료아동)	117	117	-	36.5520	17.8421	2.8685	19.6106	76.8732	6년	
	36B	36B	청년 (주거약자)	28	28	-	36.5520	17.8421	2.8685	19.6106	76.8732	6년	
		36C	고령자	150	56	94	36.5520	17.8421	2.8685	19.6106	76.8732	20년	
	44A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20	30	90	44.5022	22.0045	3.4924	23.8759	93.875	6-10년	
	44B	44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0	16	34	44.4109	21.8863	3.4853	23.8270	93.6095	6-10년	
	44C	44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30	35	95	44.5748	21.1719	3.4981	23.9149	93.1597	6-10년	
	44D	44D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	19	19	44.3458	21.8202	3.4802	23.7920	93.4382	6-10년	
	44E	44E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8	9	9	44.7423	22.7674	3.5113	24.0048	95.0258	6-10년	
	51A	51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8	14	14	51.9289	26.7472	4.0753	27.8605	110.6119	6-10년	

※ 청약시스템의 공급형 표시, 계약서의 공급형 표시, 위 공급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이므로 공급형의 주택구분을 기준으로 계약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는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별로 부과되며, 전용면적 외에도 계단, 복도,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면적의 관리비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단지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주택 구분	청약 구분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동탄2 A105	26A	26A1	대학생		33,660	3,366	30,294	148,000	(+)	47,660	78,000
									(-)	17,660	181,330
		26A2	대학생 (보호종료)		33,660	3,366	30,294	148,000	(+)	47,660	78,000
									(-)	17,660	181,330
	26B	26B1	주거급여수급자		29,400	2,940	26,460	129,000	(+)	41,400	69,000
									(-)	15,400	158,160
		26B2	청년	소득 有	35,280	3,528	31,752	155,000	(+)	50,280	80,000
									(-)	18,280	190,410

단지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주택구분	청약구분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증감구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소득 無	33,320	3,332	29,988	147,000	(+)	47,320	77,000
									(-)	17,320	180,330
		26B3	청년(보호종료)	소득 有	35,280	3,528	31,752	155,000	(+)	50,280	80,000
									(-)	18,280	190,410
				소득 無	33,320	3,332	29,988	147,000	(+)	47,320	77,000
									(-)	17,320	180,330
	36A	36A1	청년	소득 有	48,240	4,824	43,416	213,000	(+)	69,240	108,000
									(-)	24,240	263,000
				소득 無	45,560	4,556	41,004	201,000	(+)	65,560	101,000
									(-)	23,560	246,830
		36A2	청년(보호종료)	소득 有	48,240	4,824	43,416	213,000	(+)	69,240	108,000
									(-)	24,240	263,000
				소득 無	45,560	4,556	41,004	201,000	(+)	65,560	101,000
									(-)	23,560	246,830
	36B	36B	청년(주거약자)	소득 有	48,240	4,824	43,416	213,000	(+)	69,240	108,000
									(-)	24,240	263,000
				소득 無	45,560	4,556	41,004	201,000	(+)	65,560	101,000
									(-)	23,560	246,830
		36C	고령자		50,540	5,054	45,486	223,000	(+)	72,540	113,000
									(-)	25,540	275,080
	44A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4,800	6,480	58,320	286,000	(+)	92,800	146,000
									(-)	32,800	352,660
	44B	44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4,800	6,480	58,320	286,000	(+)	92,800	146,000
									(-)	32,800	352,660
	44C	44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4,800	6,480	58,320	286,000	(+)	92,800	146,000
									(-)	32,800	352,660
	44D	44D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4,800	6,480	58,320	286,000	(+)	92,800	146,000
									(-)	32,800	352,660
	44E	44E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5,200	6,520	58,680	287,000	(+)	93,200	147,000
									(-)	33,200	353,660
	51A	51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4,800	7,480	67,320	330,000	(+)	107,800	165,000
									(-)	37,800	407,080

- **공급신청은 공급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경쟁시 순위→추첨) 및 순위부여(경쟁시 순위→추첨)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동호배정은 전산추첨)합니다.
- 동일한 공급형(주택구분) 범위 내에서 일부 공급대상 주택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시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급대상 계층 예비당첨자에게 **시설의 변경(세대 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유무 등) 없이 최초 공급형 및 공급계층의 시설 상태로 우선공급**(동호배정은 전산추첨 배정하며 주거약자 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합니다.

 ※ 남는 주택의 공급대상별 공급 순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대학생→신혼부부→청년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계약자 및 예비자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거나 예비당첨자가 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 또는 예비당첨자 자격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위약금도 부과됩니다.
- 빌트인세탁기 및 빌트인냉장고는 **공급형(청약구분)** 기준 **26A1, 26A2, 36A1, 36A2, 36B 타입**에만 설치되며 시공된 상태로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에어컨은 **공급형(청약구분)** 기준 **26A1, 26A2, 26B1, 26B2, 26B3 타입**에만 설치되며 시공된 상태로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급형(청약구분)** 기준 **36B, 36C타입**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거약자 전용단지(2338동) 및 3층 이하 저층부(2342동)에 공급됩니다. **(단, 10.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에 따라 일부 시설은 신청자에 한해서 설치 예정)**
- 각 공급주택의 일부 세대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원주민 임시거주용 임대주택(360호)으로 향후 공급될 예정입니다.
-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 면적 외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으로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 또는 재계약(갱신)자 또는 계층변경자는 임대차계약(재계약)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임대조건 적용)과 조사된 입주자격(입주계층, 소득유무에 따른 할인대상 여부, 할증대상 여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입주시점 등 별도 지정기간(별도안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및 주차장 면적, 단지 내·외부환경,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를 각각 3배수 이내로 선정** 합니다. 다만 우선공급 대상자가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대상자 수만큼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가선정하며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가 우선공급 신청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1인	4,024,661원 이하(120% 적용 금액)
2인	5,505,914원 이하(110% 적용 금액)
3인	6,718,198원 이하
4인	7,622,056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지역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대학생)	화성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우선공급	추첨

3-1-1. 대학생(보호종료아동)

■ 우선공급대상자(보호종료아동)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종료아동**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1순위	해당 주택 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보호종료아동(우선공급)	순위 → 추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1983.05.31.~2004.05.30.)**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기준)	1인	4,024,661원 이하(120% 적용 금액)
	2인	5,505,914원 이하(110% 적용 금액)
	3인	6,718,198원 이하
	4인	7,622,056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본인 기준)		4,024,661원 이하(120% 적용 금액)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함)

※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했으나 자격검색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치며, 소명결과에 따라 수정계약을 체결함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우선공급	추첨

3-2-1. 청년 (보호종료아동)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종료아동

1순위	해당 주택 건설지역**(화성시)** 거주지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보호종료아동 (우선공급)	순위 → 추첨

3-2-2. 청년(주거약자)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 (우선공급)	추첨

3-3.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1인	4,024,661원 이하(120% 적용 금액)
2인	5,505,914원 이하(110% 적용 금액)
3인	6,718,198원 이하
4인	7,622,056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고령자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우선공급	추첨

3-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월평균소득금액
2인	5,505,914원 이하(110% 적용 금액)	6,506,989원 이하(130% 적용 금액)
3인	6,718,198원 이하	8,061,838원 이하(120% 적용 금액)
4인	7,622,056원 이하	9,146,467원 이하(120% 적용 금액)
5인	8,040,492원 이하	9,648,590원 이하(120% 적용 금액)
6인	8,701,639원 이하	10,441,967원 이하(120% 적용 금액)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맞벌이 793,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2인이 동일단지에 중복신청할 경우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 요건을 갖춘 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 제외)

※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자녀 출산(태아도 포함) 2년 이내인 신혼부부(예비신혼과 한부모가족도 포함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기준에 따라 배점

※ **출산기간의 확인은 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상세)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산정함**

• **배점**(우선공급 2순위 적용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감정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상단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클릭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맞춤형 임대주택]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동탄2 A105 경기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3980064**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추첨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공고일(2023.05.30)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청약 접수		'23.6.19.(월) 10:00 ~ '23.6.22.(목) 17:00	·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접수 대상자 발표		'23.7.4.(화) 16:00 이후	
서류접수 (서류제출대상자)		'23.7.11(화)~'23.7.14.(금) 10:00~17:00	· **우편제출 :** 우편번호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현장접수처에서도 접수[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됨** **※ 서류 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이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 배송 조회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조사		약3개월 소요	·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당첨자(예비자) 발표 (계약방법 안내)		'23.10.19.(목) 16:00 이후	·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23.11.2.(목) 17:00 까지 **[전자계약 1일전 입금]**	· **개인별 가상계좌**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의 고객서비스/계약정보 조회에서 확인
	전자계약	'23.10.31.(화) 10:00시 ~ '23.11.3.(금) 17:00시 까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도와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현장계약]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현장 계약 가능시간 :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은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방식의 변경

시는 청약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현장접수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미성년자는 필요서류(계약안내 참조)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시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아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는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게시됩니다.
-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5. 신청서류 일괄 제출 가능)

*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25-7848**[평일 10:00~17:00 가능]**

■ 서류제출 방법

ㅇ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일정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제출) 우편번호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행복주택 공급담당자)

(현장접수)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25-7848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ㅇ 준비서류는 아래 "6.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흘림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PC)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 인터넷(PC)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공고선택	주택단지 선택	신청유형 선택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서약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ㅇ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낮은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3.5.30.) 기준 화성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5.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비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만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 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세대 모두작성 * 예비신혼부부 계층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 작성 * 고령자 계층 : 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흘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제외**	1통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의 경우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서식)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신혼부부 신청자 중 우선공급대상자 2순위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신청자(2순위만 해당)는 **서류제출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필수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 외 신청자는 입주전까지 사본 제출 가능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PC)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접수시점에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보호종료 아동 (우선공급 대상자)	• (**퇴소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붙임 서식)** 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중 한가지 서류 • (**퇴소 예정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붙임 서식)**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입주시까지) ③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입주시까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작성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청년계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호종료 아동 (우선공급 대상자)	• (**퇴소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붙임 서식)** 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중 한가지 서류 • (**퇴소 예정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붙임 서식)**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입주시까지) ③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입주시까지)	신청자작성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인 경우]77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학교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공급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며 혼인합산기간 확인을 위해서 제출필요)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 제출(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청년장애인, 고령자세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⑥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6.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함)**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예비신혼부부 포함)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공사 소정양식-붙임,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10.19.(목) 16:00이후 발표]**

○ 당첨자 발표는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됩니다.

* 발표일정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서류심사 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GH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게시됩니다.

○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일정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SMS 발송)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로그인** (휴대폰 인증) ⇨ **전자계약체결** (공인인증서) ⇨ **계약서 출력**

*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계약을 도와드리며, **미성년자는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와 계약 상세절차는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확인 과 SMS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정보 전달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을 통보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전자계약체결(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장계약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ㅇ **현장계약**

* 계약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25-7848
 [가능시간 : 10:00 ~ 17:00]
* 현장계약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 수기 서명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관련 본인인증 강화로 현장 전자계약 체결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계약금 확인 및 현장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예정일 1일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전자계약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동의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청년, 대학생 계층
(보호종료아동 포함)</td><td>6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계층</td><td>20년</td></tr>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 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d></tr>
<tr><td>자동차 등록 관련</td><td>
• 임대주택 단지 주차등록 허용대상은 고가차량이 아닌 ①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②임차인 등의 전용차량(임차인 등이 전용하는 렌트・리스차량에 한정함) 이며, 이외 차량은 주차등록 및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대학생이 소유하거나 전용하는 차량은 고가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등록이 불가합니다.
</td></tr>
</table>

	* 고가차량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입주자격 기준 자동차가액 초과 차량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공고일 기준 3,686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 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 대상자별 일반 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갱신계약시 자산·자동차가액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331동은 단지출입구에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2331동, 2332동은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39동, 2340동, 2341동, 2342동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및 냄새, 실외기 소음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2339동, 2340동, 2341동, 2342동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홍보물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급탕계량기,난방계량기,전기계량기,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단자함(분전함,통신단자함)이 거실/침실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특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등급) 입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바닥, 뒷면 벽체, 상부 천정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빌트인세탁기 및 빌트인냉장고는 **공급형(청약구분)** 기준 **26A1, 26A2, 36A1, 36A2, 36B 타입**에만 설치되며 시공된 상태로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에어컨은 **공급형(청약구분)** 기준 **26A1, 26A2, 26B1, 26B2, 26B3 타입**에만 설치되며 시공된 상태로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44A, 44B, 44C ,44D, 44E, 51 타입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되는 현관중문은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가 아닙니다.
- 취사용 가스설비는 51타입에 하이브리드형(전기쿡탑 2구, 가스 1구)으로 설치되고, 기타타입(26A, 26B, 36A, 36B, 36C, 44A, 44B, 44C, 44D, 44E)은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화장실, 현관등의 단차 및 타일 나누기도는 현장여건상 홍보물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부 세대의 경우 입주민의 이동 동선 및 관리자의 관리동선에 의한 세대내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홀 인접 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 등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가 축소되어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열고 가동하여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 및 전열교환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원칙상 불가하며, 임의의 못박음이나 드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세탁기실 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설치 위치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3~10층 복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원칙상 불가하며. 특히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스탠드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샤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경기도, 화성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는 CCTV, 비상벨, 방송 등을 설치합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입주자전용,방문자전용)에 차량출입 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학원 및 등하원 차량 드랍오프 존은 주출입구에 위치함)
- 홍보물에 표현된 최고층수는 해당 동의 최상층 기준으로 작성된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범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동별 지하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335동, 2336동의 동 출입램프는 후면의 옥외 동출입구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필로티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퍼스널모빌리티보관함이 설치될 수 있고, 해당시설 입주자 공용사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퍼스널모빌리티보관함은 설치동의 부속시설이 아닙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TV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북측 2333동, 2334동 보행자 통로 경계부는 고저차로 조경석쌓기 및 콘크리트 옹벽(높이: 최소 1.0M~최대 4.0M)이 일부 조성됩니다.
- 주차대수는 총 1,071대(세대당 0.71대, 근생 옥외주차 19대, 옥외주차 126대 포함) 이며, 일반주차 450대, 장애인 43대, 확장형 442대, 경형 78대, 평형 4대, 친환경 2대, 전기 52대(급속 4대, 완속48대)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출입구는 입주자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외주차장에는 지붕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7m 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단지 주출입구 지상에 주차장으로 설치되며,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구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계열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331동, 2341동, 2342동은 전기실과 발전기 및 상가 기계실 근접하여 엔진펌프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를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가 각 동 또는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332동과 2333동 사이의 있는 비상차량 출입구는 평소에 개방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기부채납부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수종, 수량, 식재위치 등)처리될 수 있습니다.
-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 범위내에서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보관소는 내부 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시공시 최종 옥외배관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2342동은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단지 경계로 철제난간 또는 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기반시설 및 토지의 용도 등은 조성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 시기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 단지 정문 통과시 신리 IC를 통과하는 차량 및 인근단지, 대규모 물류단지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서측으로 용구대로가 지나가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39동, 2340동, 2341동, 2342동의 지하1층~지상1층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됩니다. 소음도 및 생활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31동, 2332동, 2339동, 2340동, 2341동, 2342동의 지하1층~지상1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계 기관(경기도, 화성시)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정 공간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지만 비상시(화재 등)와 이사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10.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신청 및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신청 및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시 서면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 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아래의 신청(제공) 가능한 편의증진시설외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재, 좌변기·세면대·샤워공간 주위 안전손잡이,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 이상 확보, 출입문 손잡이 높이 조정(0.8M~0.9M 사이), 현관 수직·수평 손잡이, 현관 및 욕실의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 욕실 미닫이문은 기본적으로 설치(제공)됩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 신청(제공) 가능한 편의증진시설 :

구분	설치항목	시설내용	신청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실	시각경보기	화재시 시각적인 경보를 발하는 장치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 밝기	거실 조명의 밝기 600~900럭스(lux)(미신청시 평균 밝기 474럭스)	청각장애인
침실	조명 밝기	침실 조명의 밝기 300~400럭스(lux)(미신청시 평균 밝기 446럭스)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앉아서 사용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
욕실	장애인샤워시설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1개, -자형1개), 좌식의자	지체.뇌병변장애인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1개)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기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는 세면기 설치	지체장애인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시 시설 설치로 인하여 제공된 평면과 본시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주택성능등급 성능 수준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성동탄2 A105BL 경기행복주택]

1) 소음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 구조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춤(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3)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사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정보 제공 및 건설기준

- 44A타입은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26A, 26B, 36A, 36B, 36C, 44B, 44C, 44D, 44E, 51타입은 세대 발코니에 위치한 세대 간 경계벽에 경량벽체가 설치됩니다.

12.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현황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업체	감리업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 극동건설(주) 컨소시엄	- 극동건설(주) - 대림건설(주) - 동원건설산업(주) - 동서건설(주)	-	- ㈜유탑엔지니어링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대명기술단 - ㈜건일엠이씨

13. 위치안내

구분	위 치
현장 접수처 . **운영 :** 10:00~17:00 [휴일 및 점심시간제외] . **상담전화 : 031)225-7848**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 주의: 자격심사서류 우편제출자는 아래주소로 발송 우편번호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 **031-225-7848**

2023. 5. 30.

경기주택도시공사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모집공고문 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 서명(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직접서명,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자격조사, 심사, 계약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계약내역, 자격정보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3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은 **동탄2 A105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주택유형(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2023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ㅁㅁㅁㅁㅁㅁ-ㅁ******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ㅁㅁㅁㅁㅁㅁ-ㅁ******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정보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배우자		-		
		-		
		-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동 의 서

계 약 대 상 : []행복주택 동 호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날인)

.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각1부.

※ 담당자 확인사항

1.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은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2.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 한 인감증명서 수령하여야 할 것.
3.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부모의 부 존재 확인해야함.
4.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판결서로 증빙을 받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수령.

※ 동의서 징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 친권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판결 요망

[붙임]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각 서 [대학생용(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필요)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각 서

계 약 대 상 : [] 경기행복주택 동 호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공사가 정한 기간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현장신청용)

1. 신 청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내용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비고
			□ 우선공급 □ 일반공급

위 신청인의 인터넷 청약(전산입력) 내용을 신청인의 자격(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자격)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력사항은 본인이 확인.입력한 내용 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입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현장계약용)

1. 계 약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계약주택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동 호

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위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퇴소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인가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상기 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 각서

본인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로서 경기행복주택에 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령 취지를 감안 해당 주택의 입주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서)를 제출하고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입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명 :

생년월일 :

신청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